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 모집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6급 이하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 모집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해군참모총장

군무원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채용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원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국방부,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 주관 2024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 할 수 없으며**, 중복 또는 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원서접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 · 육군 · 해군(해병대) · 공군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접수 가능
- 장애인 구분모집과 일반모집([해군 군무원 채용 공고 제2024-8호](#)) 간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시 개인별 입력자료(성명, 연락처,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 자격·면허증 취득정보, 장애인 취득정보 등)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2024년 일반군무원 경쟁채용시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폐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관련 문의 : 해군본부 군무원정책과 공개채용담당
☎ 042-553-1293, (군내 전화) 910-1293

* 전화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09:00~11:00), 오후(13:30~17:00)

가. 공개경쟁채용[장애인 구분 모집]

채용직급/인원			응시자격	근무예정지역	임용예정일
직렬	계급	인원			
행정 (장애인)	9급	14	• 장애인 구분 모집	전국	수시
군수 (장애인)	9급	8	• 장애인 구분 모집	전국	수시
군사정보 (장애인)	9급	1	• 장애인 구분 모집	전국	수시
전기 (장애인)	9급	11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전자 (장애인)	9급	3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통신 (장애인)	9급	1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사이버 (장애인)	9급	2	• 장애인 구분 모집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사이버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전국	수시
탄약 (장애인)	9급	2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선체 (장애인)	9급	6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선거 (장애인)	9급	5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함정기관 (장애인)	9급	8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 ※ 공개경쟁채용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붙임 2】 참고
- ※ 근무예정 기관·지역 및 임용예정일은 조직개편 등 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직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4. 7.12.)까지 취득(최종합격)하여야 함.

가. 공통 필수자격

2024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4. 9. 27.\)](#)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 「공직선거법」제266조에 따른 선거범죄자
 - 「정치자금법」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 「병역법」제76조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3.22.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응시연령

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이상	20세 이상	2004.12.31. 이전 출생자
8급 이하	18세 이상	2006.12.31. 이전 출생자

다.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 1) **필기시험 전일('24. 7. 12.)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 영어능력검정시험 : 응시 당해 연도로부터 **3년 이내 성적, 2021.1.1.일 이후 성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024년부터 성적 인정기간(기존 4년) 폐지**

- 2) 채용 직급별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일('24. 7. 12.)까지**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채시험 응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 필수 직렬(12개)
 - 사서, 환경, 전산,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응시 자격증 · 면허증 현황은 붙임 #1 참조)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등

* 공통/공채 응시자격 포함 장애인 구분모집 추가요구 사항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24. 5. 10.)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외 다른 직렬의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 접수 불가)
- 4)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앞, 뒤),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중 1부를 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24. 5. 14.(화) ~ '24. 5. 17.(금)

('24. 5. 17.(목) 우체국(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 제출주소 :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군무원정책과 공개채용담당

3 채용시험 일정

구분	응시원서 제출기간	최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임용 예정일
공개 경쟁 채용	5. 7.(화) 09:00 ~ 5.10.(금) 18:00 * 5.10. 18:00 마감	5.11.(토) ~ 5.13.(월) 18:00까지	필기시험 면접시험	6.28.(금) 9. 6.(금)	7.13.(토) 9.23.(월) ~ 9.27.(금)	8.19.(월) 10. 7.(월)	'24.11. 1.(금) 이후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공지사항'에 게시)

※ 향후 시험장소,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 (www.navy.mil.kr)에서만 공지함.

* [해군모집] → [군무원채용관리] → [채용공고] → [공지사항]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필기시험(1차) ⇒ 면접시험(2차)

나.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직급별 필기시험 세부 과목은 【붙임 1】 참조

※ 9급 과목 : 5과목(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2) 문제형식 및 문항 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3)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4)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150%) 범위 내

※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5) 필기시험 응시 지역 : 창원, 동해, 평택, 목표, 화성, 포항, 제주

※ 응시원서 작성 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 가능

(원서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1) 시험주관 : 해군본부

2)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3) 합격결정 기준

- 면접평가요소 5개항에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라.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시험 점수(50%)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순으로 채용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이 불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 1) 접수기간 : '24. 5. 7.(화) 09:00 ~ 5. 10.(금) 18:00 / 4일간
-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단, '24. 5. 10.(금)은 18:00에 마감)
※ 지정된 마감시간 ('24. 5. 10.(금) 18:00 정각)까지 원서등록 및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어야 함.
- 3) 접수방법 ※ 모바일 환경 원서접수(결제) 불가
 -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접속
[해군모집] → [군무원채용관리] → [지원서작성/확인] → [지원서작성] →
[전형료 결제]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 출력은 '24. 5. 14.(화) 10시 이후 가능
 - 지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파일용량 100KByte 미만,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정면(3.5×4.5cm) 상반신 반명함판 컬러사진
*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발생
* 응시수수료 결제를 위해 개인별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원서접수기간 내 전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원서제출이 최종 완료
 - '24. 5. 10.(금) 18시 이후 전형료 결제 시 해당시험 원서접수 무효 처리됨
 -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에서만 필기시험 응시
* 필기시험 응시지역(7개 지역) : 창원, 동해, 평택, 목포, 화성, 포항, 제주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수수료(이체수수료 제외 금액)를 환불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이며,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 시 안내 예정
- 5) 필기시험 응시지역 선택 :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필기시험 응시 지역 : 창원, 동해, 평택, 목포, 화성, 포항, 제주
- 6) 응시수수료 결제 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
* 기술지원 및 INIPAY 설치문의 : 1588-4954(KG 이니시스 고객센터)

나. 원서접수 취소

- 1) 취소기간 : '24. 5.11.(토) ~ 5. 13.(월) 18:00까지
- 2) 취소방법
 -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접속
[해군모집] → [군무원채용관리] → [지원서작성/확인] → [전형결과조회] →
[원서취소] 이용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전형료 환불(이체수수료 제외)

다. 응시번호 확인 및 응시표 출력 : '24. 5. 14.(화) 10:00부터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1)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필기시험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2) 지원서작성 시 응시자는 장애 직렬인지 반드시 확인
- 3) 원서접수 시 선택한 필기시험 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4) 원서접수 기간 종료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5) 원서접수 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분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 바랍니다.
*** 비밀번호 분실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 6) 합격자(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하므로 본인의 응시번호를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7)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 생성됩니다.
- 8) 각종 증명서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처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9) 해군(해병대 포함) 주관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으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10)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주관 시험에서는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11) 응시자는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원서접수 종료일 임박 시 접속자 폭증 등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1)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7급	9급
토 익 (TOEIC)	기준점수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	285점 이상	235점 이상
토 플 (TOEFL)	기준점수	PBT 480점 이상 IBT 54점 이상	PBT 440점 이상 IBT 41점 이상
	청각장애	PBT 319점 이상	PBT 292점 이상
텝 스 (TEPS)	기준점수	268점 이상	211점 이상
	청각장애	161점 이상	127점 이상
지텔프 (G-TELP)	기준점수	Level 2 47점 이상	Level 2 32점 이상
플렉스 (FLEX)	기준점수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300점 이상	240점 이상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

*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11.제출자료】(p.18) 참고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가)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인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예)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 2021.1.1.이후 시행한 시험의 성적으로서, 시험시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2023.1.1.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함.

※ 2021. 1. 1.~ 2021. 12. 31. 기간 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TOEIC, TOEFL, TEPS, G-TELP, FLEX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성적 확인이 불가하더라도 원서접수 시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함.

나) 2021.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

다)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각 군 포함)·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및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 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수시·특별시험임을 사전에 미확인 후 응시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부정응시로 처리될 수 있음**)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 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7급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4급 이상

※ 2020년 5월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체계 개편에 따른 시험종류의 변동 (초·중·고급 3종 → 기본·심화 2종)과 상관없이 기준(인증)등급을 그대로 적용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인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올해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폐지

다. 성적 입력 방법

- 1) 영어성적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시험점수, 시험일자, 수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입력하여야 함.
※ 영어 성적 입력 정보 : 시험종류, 시험점수(성적), 시험일자, 수험번호
- 2) 한국사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의 인증등급, 시험일자, 인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한국사 성적 입력정보 : 등급(급수), 취득일자, 인증번호(하이픈 ‘-’ 필수입력)
- 3) 영어성적 및 한국사 기준점수 준비 중인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시험 “취득증”으로 우선 접수하고,
※ 기준점수 취득 후 수정입력기간(7.13. ~ 7.17. 18:00까지)에 취득한 영어성적 및 한국사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인정됨.
※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4) 성적 오기입 등으로 인하여 해당시험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안 될 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시험일자, 점수, 인증번호 등 성적표에 기재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응시원서 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7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자격증 필수 직렬

가.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2개)

사서, 환경, 전산,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응시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3. 7. 12.)까지 취득하여야 함.
※ 응시자격증 세부내역은 【붙임 2】 참조

나. 자격증 입력 방법 : 자격증 종류, 발행기관, 자격증 번호, 취득일자(합격연월일)

※ 자격(면허)증은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번호 : 예)01234567890A(숫자 11자리, 마지막 알파벳 대문자)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의사상자 등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기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응시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1개의 자격증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직렬은 가산 특전에서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가점비율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적용범위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한함
- 선발범위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 면허증 소지자

1) 적용대상 직렬(응시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부여)

직군	직렬 (30개)
시설	토목, 건축, 시설
정보통신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공업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행정	선체, 선거, 행정기관, 잠수
항공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 기상예보
보건	의공

* 가산대상 자격 · 면허증 세부내역은 【붙임 2】 참고

* 가산되는 자격 · 면허증을 2개 이상 보유한 응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

2) 자격 · 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사서, 환경, 전산,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은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라. 가산점 적용대상자 입력 방법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응시원서 작성 시 가점비율 선택(10% 대상, 5% 대상, 3% 대상), 취득일, 보훈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에 모두 해당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입력 정보 : [가점비율](#), [취득일](#), [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 적용대상자 입력 정보 : [가점비율](#), [취득일](#), [증서번호](#)

2)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응시원서 작성 시 취득(합격)일, 자격증명칭,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산되는 자격증·면허증을 2개 이상 보유한 응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기 바랍니다.

※ 자격증·면허증 입력정보 : 취득일, 자격증명,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번호 : 예)01234567890A(숫자 11자리, 마지막 알파벳 대문자)

3) 응시자가 입력한 내용이 오기입으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조회가 안 될 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응시/가산 자격증·면허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마. 가산점 적용 유의사항

- 1) 필기시험 시행 전일(24.7.12.)까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에 해당하거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가산 자격증·면허증을 소지(취득)한 경우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산 자격증·면허증의 가산점은 각각 적용함.
- 2)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3)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4) 응시원서 접수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점되지 않음
- 5) 취업지원대상 /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과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 6) 응시원서 접수 또는 수정입력 기간에 입력한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해야만 유효하게 인정하며 가산점 부여
※ 원서접수 또는 수정입력 기간 이후 가산점 불일치자 중 증명자료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 수정입력 사유

- 1) 원서접수 시 입력한 자격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성적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수정입력 기간에 해당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해야 인정받음.
- 2) 취업지원대상 및 의사상자 등 **자격취득 중인** 경우
 - ※ 원서접수 시 취업지원대상, 의사상자 등 자격을 취득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접수한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란 “**취득중**”으로 접수하고, 이후 **필기시험 전일('24. 7.12.)까지**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 3) 응시·가산 자격증 및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중**’인 응시자
 - ※ 원서접수 시 응시 · 가산 자격증 및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취득하지 못하고 “**취득중**”으로 접수하고, 이후 **필기시험 전일('24. 7.12.)까지** 자격증 및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취득한 경우

나. 수정입력 기간 : '24. 7.13.(토) 09:00 ~ 7.17.(수) 18:00

※ **수정입력 기간 이외 수정 불가, 기간 내 중단시간 없음**

다. 수정입력 방법

-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접속
[해군모집] → [군무원채용관리] → [지원서작성/확인] → [지원서 수정]

라. 수정입력 항목

- 1) 취업지원대상/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산)점 비율
- 2)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번호, 취득일 및 가산비율 등
- 3)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종류, 시험점수(등급), 시험일자 등

※ **자격취득 연월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명확해야 하며, 수정입력 기간에 미입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 다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단, 해군 주관 시험 내 다른 직위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니더라도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음.

나. 임산부 및 기타 일시적 질병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도 편의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하면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편의지원 제공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자의 시험장 편성 및 시험물품 준비를 위해 사전 파악/접수 필요

라. 제출기간 : '24. 5. 14.(화) ~ 5. 17.(금)

* '24. 5. 17. 우체국(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 반드시 제출 기간 ('24. 5. 14. ~ 5. 17.)의 소인분이 찍혀있어야 함.
(제출 기간 이전 또는 이후 소인분은 인정하지 않음)

마.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등기우편 제출

(직접방문 또는 택배를 통한 서류제출 불가)

- 【불임 3】 양식에 주소, 직렬, 계급, 응시번호, 응시자 등을 기재 후 인쇄하여 규격봉투 곁면에 부착
- 일반 서류봉투 규격(24.5×33.5cm) 준수

바. 제출주소 :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군무원정책과 공개채용담당

① 제출기간 : '24. 5. 14.(화) ~ 5. 17.(금)

* '24. 5. 17.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직접방문 또는 택배를 통한 서류제출 절대 불가)

② 제출방법 : 등기우편

- 【불임 3】 서식에 주소, 구분, 직렬, 계급, 응시번호, 응시자 등을 기재 후
인쇄하여 규격봉투 곁면에 부착
- 일반 서류봉투 규격(24.5×33.5cm) 준수
- 클립, 비닐속지, 스테이플러 등 사용 금지

③ 제출주소 :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군무원정책과 공개채용담당 앞

※ 해군 응시자에 한하여 위 주소로 제출하고, **해병대** 응시자는 해병대 공고문 참고

가. 응시자 공통[해당자]

* 의사 진단서(소견서)는 원본, 그 외 서류는 사본 가능

1)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자

【별지】'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를 참고하여 제출

2) 의사상자 등

- ① 응시자가 '의상자'이라면 의사상자 증명서 1부,
- ② 응시자가 '의사자 유족 · 의상자 가족'이면 의사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차상위계층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발급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 · 진위확인 → 증명서발급

4) 개명(改名)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응시자 전원 준비사항[시험실시기관 요구 시 별도 제출]

- 1)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접수한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격·면허증/가산 자격증, 취업지원대상, 차상의계층, 의사상자 등을 해당 시험기관 및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 2)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성적표,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을 사전에 준비/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요구 후 응시자의 입증서류 미제출 시 발생되는 불이익(해당시험 무효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대상자

1) 적용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2) 제출서류 등 안내

대상자	제출서류
① 두 귀의 청력손실 80dB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
②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고,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 의사진단서 원본*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①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② (의사진단서 필수 포함 내용)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장애정도 및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 진술, 듣기점수 제외 해당 여부

※ 장애정도심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에 따라 검사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상기인은

-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으로서 군무원 임용시험의 어학능력 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3) 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신청방법 및 절차

- 원서접수 시 청각장애인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의 의사진단서 원본과 영어 성적표 원본을 모두 등기로 제출
-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군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마.**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아.** 최초 임용된 지역(부대)에서 인사운영상 필요시 타지역(부대)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자.** 개명(改名) 이전에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등록·결정되었거나 자격·면허증을 취득했다면, 해군본부 공개채용담당에게 연락 바랍니다.
- 차.** 원서접수시 입력한 전화번호 변경 시 해군본부 공개채용담당에게 연락 바랍니다.
- 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당해 시험에서만 응시 서류로 활용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파.** 해군본부 군무원정책과 공개채용담당(☎.042-553-1293 / 09:00 ~ 11:00, 13:30 ~ 17:00)

13

추가면접 / 합격제도 안내

가. 추가면접

6급 이하 공채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18조의2에 따라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추가합격

공채 및 경채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붙임 #1.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2.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3. 서류제출 시 서류봉투 겉면 부착

【붙임 1】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1.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단, 공통과목은 영어 및 한국사이며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직 력	계급	시험과목
행정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군수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경영학
군사정보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전기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전자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통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사이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탄약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선체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거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합정기관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붙임 2】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 면허증

자격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행 정	자격증 미적용				
군 수	자격증 미적용				
군사정보	자격증 미적용				
전 기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밀측정,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생산자동화,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캐드, 전자계산기,
통 신	정보통신, 전자응용	통신설비, 전자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무선설비,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사이버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탄 약	화공, 화약류관리, 화공안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전기응용	위험물, 전자기기, 전기	화약류제조, 화공,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전기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전자,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선 체	조선, 용접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재시공	조선, 용접	조선,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공	전산용조선제도, 선체건조, 판금제관, 동력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배관
선 거	조선		조선	조선	금속도장, 건축도장, 선체건조
함정기관	조선, 차량, 1~2급기관사	자동차정비	조선, 자동차정비, 3~4급기관사	조선, 자동차정비, 5~6급기관사	

※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하되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및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24.7.12.)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불임 3】

보내는 사람
우)

응시구분 : 공개경쟁채용(장애인 구분모집)

제출구분 : 장애편의지원 기타서류
* 해당 부분에 체크할 것.

응시직렬/계급 :

응 시 번 호 :

응시자(연락처) :

받는 사람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663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군무원정책과

<해군 군무원 채용 제출서류 재 증>

공개채용담당 앞